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3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9. 7. 9.(화) 14:34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이효성 위원장

김석진 부위원장

표철수 상임위원

허 육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음

제3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4시 34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전혜선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전혜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전혜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9년도 제3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자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제31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그리고 제32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1건 및 <보고안건> 1건이 원안대로 의결·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 및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에스케이텔레콤(주)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9-33-139)

○ 이효성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에스케이텔레콤(주)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피심인인 에스케이텔레콤(주)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안)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피심인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사실관계입니다. 피심인은 2019년 4월 3일 갤럭시S10 5G 단말기 지원금을 홈페이지에 공시한 후 이를 후인 4월 5일 동 단말기 지원금을 변경 공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변경 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법성 판단입니다. 피심인이 4월 3일 공시한 지원금을 4월 5일에 변경 공시한 것은 공시지원금을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5> 시정명령(안)입니다. 먼저 시정명령입니다. 단말기 예약가입 기간 동안 지원금을 예고하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의 의미는 있지만 지원금 공시로 오인되거나 예고의 잣은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피심인은 개통이 시작되는 공시 적용 당일 00시부터 전산개시 이전까지 지원금을 공시하고, 예약가입 기간 중 지원금을 예고하는 경우 지원금 공시와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한 업무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다음 과태료 부과입니다. 단말기유통법 제2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라 피심인의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3항 위반 행위가 최근 3년간 1회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은 1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편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위반행위의 정도,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심인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는 사전에 위법성을 알고서 행한 것으로서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반행위의 동기를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50%를 가중하여 150만원을 부과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붙임>으로 사실확인서, 피심인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관련 규정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이 안건은 외견상은 매우 단순하면서 금액도 적은 과태료 부과 안건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처분에 따라 통신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경과사항을 보면 LGU+가 갤럭시S10 출고일은 4월 5일 0시에 요금제별로 308,000원에서 475,000원까지 지원금을 공시했습니다. SK텔레콤이 이에 앞선 4월 3일에 요금제별로 134,000원에서 220,000원까지 지원금을 공시했지만 불과 이틀만인 4월 5일에 다시 320,000원부터 546,000원까지 지원금을 상향 공시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후발사업자의 공시지원금 차별화와 발표시기 조정의 허를 찔린 SK텔레콤이 1위 사업자답지 않게 불과 이틀 만에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3항과 지원금 공시 및 계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이 기간을 비롯해서 5G 단말기 출시 이후 시장 과열 행위가 가속화되자 우리 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을 불러서 시장 안정에 관한 위원회 의지를 전달하는 등 이동통신 시장의 과열방지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일과 7일을 기점으로 이통사가 공시지원금 규모를 다시 상향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시장 과열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5G 서비스는 4차 산업혁명의 필수적인 인프라로서 활성화가 매우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이 5G 가입자 확대를 통해 통신요금의 ARPU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5G 플러스의 서비스 개발과 나아가 B2B 산업과의 연계발전 등 보다 본질적인 혁신 노력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의결주문에 동의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주시지요.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앞서 허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는 몇 가지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SK텔레콤이 4월 3일에 공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틀 만에 타사가 지원금을 많이 주는 것을 보고 그 정보를 받고서 바꿨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예.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러면 4월 5일 0시 이후에 공시를 했습니까?

○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0시 이후는 아니고 낮 12시 40분경입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낮에? 원래는 0시부터 8시 이전까지 공시를 하는 것이지요?

○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이번 시정명령에서 그렇게 하도록 넣었습니다. 원래 공시하는 시간 규정은 없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없었지만 전산이 개시되기 전까지는 액수를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허용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당일 날 여러 번 공시하는 것이 이론상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래서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위법성이 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가중해 봤자 15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규정이 과연 지켜질 것인가 하는 데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로, 또 소비자들이 혼갈리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 공시 시점을 우리가 명확하게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타사가 다른 이통사가 많이 올려준다고 해서 규정을 위반하고 자기들도 급격히 바꾸는 것이 고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한번 위반함으로써 과태료를 받아봤자 150만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장 질서를 다소 어지럽히더라도 그냥 과태료 받고 말지, 우리는 공시가를 올리겠다’ 이런 일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 규정을 바꾸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과태료 부분 부담을 느낄 수 있도록 벌과금 자체를 높이는 것을 검토해야지, 이런 식으로 150만원 같으면 대형 이통사로서는 전혀 데미지가 없는 액수인데 이렇게 무용지물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법 규정을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공시 주기 위반이 없었고, 이번에 특별하게 발생했는데 제가 봤을 때 과태료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런 일이 한번 벌어졌다는 자체가 그 회사로서 공신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확신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자주 발생한다고 말할 수 없는,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지도하겠지만 자주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계속 발생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한 번 두 번 쌓이게 되면 시정명령으로 더 강한 벌칙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과태료를 높이는 것은 큰 사업자로 봤을 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올려봤자 1억원, 2억원 하더라도 큰 사업자에게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제도개선, 과태료 올리는 것보다는 사업자들이 이것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더 강구해 보고, 또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태료의 문제보다는 이통사, 큰 사업자의 공신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위반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위반하지 않도록 계속 더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물론 회사가 받는 공신력에 타격은 분명히 있겠지요. 하지만 공시지원금 상한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상한이 없어지고, 또 어차피 계속 새로운 기종이 개발되어서 나올 텐데 그때마다 이렇게 서로가 눈치 보면서 공시지원금을 어느 한쪽에서 올리면 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 경쟁구도인데 이런 규정 자체도 되도록 위반할 수 없게끔 고쳐 놓아야지,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이 고의성입니다. 위반임을 번연히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위반한다는 것입니다. 왜? 공시지원금을 많이 올려서 가입자를 더 늘리겠다는 그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법 위반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면 법을 바꾸어야지요. 그 규정을 개정하도록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과태료가 아닌 더 법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법 개정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2019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다음은 <보고안건 가> “2019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최선경 편성평가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최선경 편성평가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유입니다. 2019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을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와 관련해서 사업자 의견수렴을 '19년 6월에 거쳤고, 7월에 '19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평가 개요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평가대상입니다. 실시간 텔레비전 등록대상 방송채널사용 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 중 전년도 방송실적분이 10개월(300일) 이상 운영 채널을 대상으로 하되, 허가·승인사업자와 동일 법인으로 운영되어 회계분리가 어려운 채널, 공공채널,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등록채널,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 종교 및 성인채널 등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상의 구분입니다. 방송사업자의 규모, 방송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해서 방송채널을 가 그룹과 나 그룹으로 구분한 후, 각 그룹 내에서 공급분야의 특성에 따라 3개의 그룹(A, B, C)으로 나누어 평가하게 됩니다. 가 그룹은 방송법상 재승인·재허가 방송사업자와 계열관계에 있거나 대규모 PP가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참고로 대규모 PP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 중 평가 시행연도 직전 3년간 방송사업 매출액이 평균 300억원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나 그룹은 가 그룹에 속하지 않는 PP가 운영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급분야입니다. 기획·제작·편성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장르특성에 따라 구분하게 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A분야는 시의성 있는 경제정보, 운동경기, 게임 등을 현장중계 방식으로 제공하는 채널입니다. B는 오락적 예능프로그램 또는 극적(劇的) 포맷을 갖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채널이고, C는 교양, 학습, 취미, 생활정보, 특정 계층 대상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가 항목입니다.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구성요인인 자원 경쟁력, 프로세스 경쟁력, 성과 경쟁력을 총 14개 항목으로 세분화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세부 평가 항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가결과의 산출입니다. 2개 그룹의 공급분야(A, B, C)별로 5등급으로 구분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매우우수가 15%, 우수가 25%, 보통이 35%, 미흡이 20%, 매우미흡이 5%로 구성됩니다. 다만, 공급분야 구분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공급분야 구분 후 등급이 구분 전보다 2단계 이상 낮아지는 경우에는 ‘공급분야 구분 후 등급 + 1단계’로 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과공개 및 활용입니다. 2개 그룹의 공급분야별로 상위 2개 등급(매우우수와 우수등급)에 해당 방송채널을 공개하도록 하고, 향후 방송대상 특별상, 과기정통부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 선정 시 제작역량 평가결과를 10% 활용 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7월부터 11월에 걸쳐 평가자료를 접수하고 분석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월 중에 방송 콘텐츠 제작역량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위원회에 평가결과를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지금 과장님의 보고한 대로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드리면 평가방식을 조금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기존에 해 왔던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계속 우수평가를 받았던 채널들이 계속 독점하는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창작 의욕이 높고, 또 규모가 작은 채널이라도 창의성이 있는 것을 북돋아 주기 위해 그런 채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해서 공급분야로 장르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게임이나 연예오락 채널장르나 마지막에는 다큐나 취미 이런 분야로 공급분야별로 세 등급(A, B, C)로 나누어서 그 안에서 경쟁을 시키면 어떨까 해서 소위 매체력이 적은 채널에게 우리가 인센티브를 준 것입니다. 그렇게 평가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또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점수는 좋은데 공급분야별로 나누어서 평가를 받아보니까 거기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 상대 평가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절대평가가 좋은 우수한 채널도 점수가 강제 할당식으로 매우 우수는 15%, 우수는 25% 이렇게 퍼센티지를 나누다 보니까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두 단계 이상 만약 평가가 낮아지면 바로 밑 단계로 조정하는 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설명을 조금 더 쉽게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이고, 그렇게 해서 일단 기본계획을 오늘 보고드리고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또 말씀 주시지요.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보고자 외 부위원장께서 충실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가결과 산출에 나타난 변경 이후의 문제점들을 보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고된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 기본계획에 동의합니다. 다만, 한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이 평가를 프로그램 제작사가 적극 활용할 경우에는 자사의 콘텐츠 제작역량 수준을 점검해 보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이런 평가에 참여했던 PP사 가운데 평가등급이 올라간 곳이나 아니면 발전된 곳이 있습니까?

○ 최선경 편성평가정책과장

- 저희가 '12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 '16년도 평가결과 대비해서 '18년도 결과를 놓고 분석해 봤더니 1등급 이상 올라간 채널이 20여개 정도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평가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역량평가 자체가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평가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사의 역량에 대해 자발적인 점검을 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그런 것들이 많아야 평가참여, 또 이 평가의 의미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평가결과 우수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우리 위원회에서 방송대상 시상식 때 제작 역량 우수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최선경 편성평가정책과장

- 가 그룹과 나 그룹으로 나누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 허욱 상임위원

- 그리고 과기정통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 선정 때 평가결과의 10%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을 좀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 보겠다고 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전되고 있습니까?

○ 최선경 편성평가정책과장

- 과기정통부와 협의는 진행하고 있고, 다만 올해까지는 10%로 기존에 반영했던 퍼센티지를 반영하되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반영하는 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속적으로 과기정통부에 이 배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욱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주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접수하겠습니다. 원래 <보고안건>이 2건으로 되어 있었는데 1건이 사정이 생겨서 일주일 연기되었습니다. 혹시 뒤에 기자 분들께서 많이 와 계시는데 그 안건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사정을 최선경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지요.

○ 최선경 편성평가정책과장

- 저희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관련해서 당초에 오늘 보고드리려고 했습니다. 오늘 보고 예정되어 있던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관련해서는 방송사업자의 범위에 대해 아직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방통위 소관하고 있는 지상파사업자 그리고 종편사업자와는 협의가 끝났고, 과기정통부가 관할하고 있는 SO나 PP 같은 경우 경영상황이 열악한 사업자가 중소PP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검토를 끝내고 과기정통부와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해 보도자료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언론인들이 혹시 막판에 안건이 빠지는 데 대해서 약간의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질문합니다. 우선 방송사업자와 그다음에 외주사 간 그 의견은 다 취합되어서 대충 다 양해하는 선에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최선경 편성평가정책과장

- 가이드라인은 방송사업자, 외주제작사 대표단체와 내용에 대한 협의는 끝났고, 어떤 사업자에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범위에 있어서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부처 간 이견이 있어서, 오늘 갑자기 빠진 것은 아니지요?

○ 최선경 편성평가정책과장

- 그것은 아닙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범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미세한 부분의 조정이 조금 더 추가로 요청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조율하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빠지는 것이지요?

○ 최선경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 김석진 부위원장

- 우리 언론인들이 부처 간 이견이 생겨서 제동이 걸렸다,

○ 최선경 편성평가정책과장

-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이렇게 보지 않도록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선경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회의 끝나고 언론인들에게 설명을 잘해 주십시오.

○ 최선경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 이효성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8. 기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차기 회의는 7월 17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9년 제3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4시 59분 폐회 】